

국가재난관리시스템 [I]

김용균^{*)}

^{*)} 소방방재청 수습대책과 사무관

〈본 특별기사는 3회에 걸쳐 연재예정〉

I. 국가재난관리 전담조직 출범 및 성과

1 우리나라의 재난환경

1. 우리나라의 재난여건

○ 우리나라는 1970년 이후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, 안전에 대한 예방투자 미흡, 재난관리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, 안전불감증 등으로 인해 '90년 이후 대규모 자연, 인적 재난을 경험하였음

○ 특히, 최근에는 태풍 「루사」, 「매미」, '03년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, '04년 3월 폭설 등 예기치 못했던 대형 자연, 인적 재난이 빈발하여 엄청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었음

○ 대규모 자연, 인적 재난이 빈발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지형학적, 기상학적 이유 이외에도 도시화, 산업화에 따른 재해취약요인의 증가와 지구온난화, 환경파괴 등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기인함

- 연강수량의 2/3가 여름철에 집중되는 기상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홍수재난의 위험성이 매우 크며 최근에는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피해지역이 광범위하고 피해규모가 대형화

- 도시화, 산업화에 따른 재난위험요인 가중

- 도시 토지이용도의 극대화, 산업화에 따른 개발사업 확대 등에 따른 불투수층의 증가로 재난발생요인 증가

- 도시집중화에 따른 건축물의 고층화, 지하화 등으로 대형재난 발생 가능성 증대

2. 재난환경의 변화양상

○ 자연적 재난환경은 기상이변 등으로 인하여 재난유형의 다양화 및 대형화

- 산림파괴, 벌목 등 무분별한 자연훼손, 환경오염물 질 증가, 지구온난화 등 지구환경 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폭염, 혹한, 폭설 등 새로운 재난유형이 등장하고 태풍 등 기존 재난유형의 경우도 그 규모가 대형화되는 추세
- 인적 재난환경은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등 국민의 안전의식 결여에 따른 대형 참사 빈발
 - 각종 산업시설의 노후화와 성장위주의 발전과정에서 생성된 사회기반시설의 부실로 인위적 재난 위험이 누적 잠재되어 있는 실정
- 국내에서도 세계의 신 재난환경의 영향 아래 한국군 해외파병으로 테러, 폭력적 소요사태 등 새로운 재난의 발생 위험성 증가

3. 안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

- 경제적 안정요구 단계 ⇒ 문화적 욕구 및 안전성 요구
- 단편적, 경험적 대응 ⇒ 종합적, 과학적, 분석적 안전 대책
- 비용개념의 안전대책 ⇒ 투자개념의 안전대책
- 사후수습 및 복구위주 ⇒ 사전예방 위주
- 국가기관의 주도 ⇒ 전국민의 참여, 총체적 대응
- 노동집약적 인력투입 ⇒ 첨단 과학장비와 기술 이용
 - ※ 매슬로우의 욕구5단계설 : ① 생리적 욕구 → ② 안전의 욕구 → ③ 사랑과 애정의 욕구 → ④ 존경의 욕구 → ⑤ 자아실현의 욕구
 - ※ 이제 의식주(생리적욕구)는 어느 정도 해결, 보다 안전한 사회에서 살고싶다는 안전의 욕구, 강하게 표출

4. 재난에 대한 국민 의식변화

- 과거에는 태풍 등 대형자연재난 발생시 “천재”, “사

람의 힘으로 어쩔수 없었다” 라고 하면 국민들이 대체로 수용하고 넘어갔으나

- 이제는 교통, 통신의 발달로 인접국, 선진외국의 재난대응 시스템과 우리의 피해정도를 실시간으로 상호비교, 평가
- 재난관리를 더 이상 국정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룰 경우 입게 될 사회, 경제적 비용증가,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 우려
- ※ 대구지하철 참사의 경우, 340명(사망 192, 부상 148)의 인명피해와 약 2,220억원의 재산손실을 입는 등 엄청난 국력손실, 국가신인도 추락
- 재산피해 : 615억원(지하철시설 570, 인근상가 45)
- 복구경비 : 1,605억원(중앙 1,147, 대구시 458)

② 소방방재청 출범이후 성과 및 발전과제

1. 국가재난관리전담조직의 출범

- '03. 3월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 구성, 운영
 - 매년 되풀이 되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범정부적 대책수립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어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기획단 구성, 운영
-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, 시행과 더불어 국가재난의 총괄관리를 전담케 하는 소방방재청이 '04. 6월 개청
 - 재난의 개념에 자연, 인적, 사회적 재난을 포함하고 안전관리계획, 중앙대책본부 등 재난관리의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, 시행('04.6.1)
 - 행정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를 확대, 개편하여 자연, 인적재난을 총괄조정하는 재난관리전담기구로서 소방방재청 출범('04.6.1)

특별기사 7월

2. 출범 이후 성과

- 총체적인 재난 대응으로 시너지 효과 거양
 - 재난발생시 일사분란한 지휘체계하에 소방, 방재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실시간 투입하여 신속한 현장 대응 가능
- 현장중심의 재난관리기능 대폭강화
 - 풍수해 및 복구 현장 수시 점검, 재난대응단계 축소, 상황판단회의제 도입 등 현장중심위주로 재난관리체계 개선
- 재난업무에 대한 중앙부처의 인식 변화 계기
 - 소방방재청 중심으로 합동점검 등 각종 재난업무를 체계적, 집중적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각 부처에서 소홀히 다루었던 재난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 마련
- 민간분야의 적극적인 참여 체제 구축
 - 민간모니터 위원 지정, 민간 공보전담위원제도 도입, 자원봉사 단체 종합상황실 근무 등 시민 참여 극대화

< '04년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대폭 감소 >

- 총 11회(호우 8, 태풍 3)의 자연재난으로 14명의 인명피해와 5,60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최근 10년간 평균피해(103명, 10,810억원)와 비교하여 피해 규모는 대폭 감소

3. 발전 과제

- 소방방재청 출범이후 성과에도 불구하고 재난상황관리 기능 분산, 예방사업 투자 소홀 및 중앙정부 의존도 증가, 복구체계 근본적인 개선 등의 구조적 문제점 상존,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
- 재난관리체제의 합리적 조정, 통합 필요

- 재난상황관리 업무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상업무, 하천관리업무 및 홍수통제업무 등이 각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효과적이고 신속한 상황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분산되어 있는 재난관리기능 합리적 조정 필요

○예방 투자에 대한 인식과 방식 전환 시급

- 체계적인 예방투자 보다는 사후복구에 예산이 편중되어 있고 지방분권차원에서 지자체의 예산편성 자율권이 대폭강화 되었으나 기관장의 인식부족으로 예방투자 소홀 우려 및 재난관리 현실과 괴리 확대
- 지역별 안전도 평가를 토대로 인센티브 제도 도입 및 유역별 종합적인 계획에 의거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project방식으로 추진방식 전환과 조직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문제해결식 조직으로 개편

○복구체계의 획기적인 개선

- 신속성만을 강조하여 피해조사 부정확, 허위과장 보고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였던 복구체계를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분리 복구 추진, 사후평가 시스템 강화 등 전반적인 복구체계의 획기적인 개선 시급

II.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

① 재난, 안전 관련 체계도

그림 1 참조

② 재난, 안전 관련 조직

1. 중앙단위 재난관리 기구

□ 중앙안전관리위원회

○구성

- 위원장 : 국무총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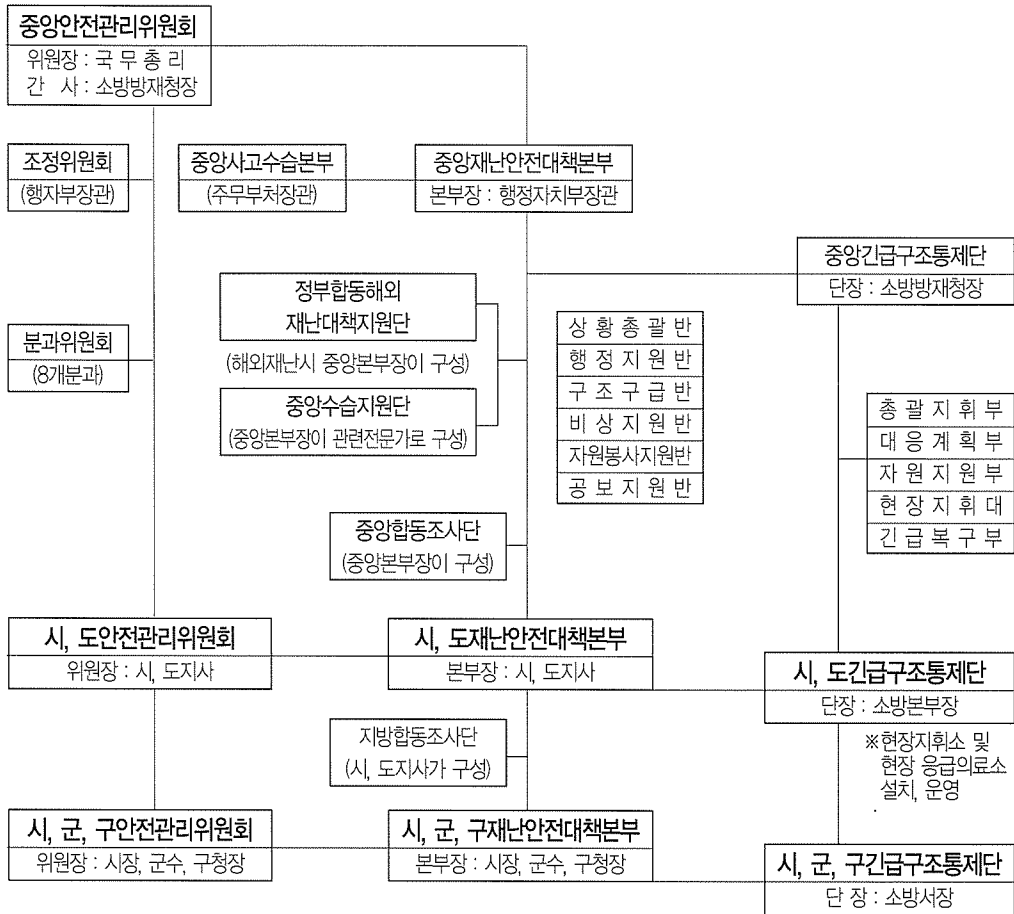


그림 1. 재난 예방, 대비, 대응, 복구 체계도

- 위 원
 - 재경, 교육, 통일·외교, 법무, 국방, 행자, 과기, 문화, 농림, 산자, 정보, 보건, 환경, 노동, 여성, 건설, 해양, 기획예산처장관,
 - 국가정보원장,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, 방송위원회위원장, 기상청장, 그 밖에 중앙위원장이 지정하는 기관, 단체의 장
- 간 사 : 소방방재청장
- 기능
 -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 심의 및 총괄, 조정
 - 국가 안전관리 기본계획(안) 및 집행계획(안)의 심의
 - 중앙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, 조정
 - 재난사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사항의 심의
 -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등
-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조정위원회
- 구 성
 - 위 원 장 : 행정자치부장관
 - 위 원

특별기사 7월

- 중앙위원회 위원이 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차관, 1급 공무원 또는 1급 상당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
-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

- 간 사 : 소방방재청장

○기능

- 중앙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의 검토
- 재난의 대비, 대응, 복구를 위한 관계부처간의 협의, 조정
- 국가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의 협의, 조정

□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

○구성

- 위 원 장 : 해당부처 장관
- 풍수해대책위원회: 행정자치부장관
- 교통안전대책위원회: 건설교통부장관
- 시설물재난대책위원회: 건설교통부장관
- 화재, 폭발사고대책위원회: 행정자치부장관
- 전기, 유류, 가스사고대책위원회: 산업자원부장관
- 환경오염사고대책위원회: 환경부장관
- 방사능방재대책위원회: 과학기술부장관
- 국가기반체계보호대책위원회: 행정자치부장관
- 위 원 : 위원장이 해당 사고대책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자 중에서 지정
- 간 사 : 위원장이 지정
- ※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에 3급 또는 3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구성, 운영

○기능

-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(안) 및 집행계획(안)에 대한 사전

심사

- 기타 분과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

○조직 운영체계

그림 2 참조

<주요 기능>

- 대규모 재난의 예방, 대비, 대응,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, 조정
- 재난상황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제반조치 요청 등

○구성

- 본 부 장 : 행정자치부장관
- 차 장 : 소방방재청장
- 위 원
 - 재경, 교육, 통일, 외교, 국방, 행자, 과기, 문화, 농림, 산업, 정보, 보건, 환경, 노동, 건설, 해양수산부, 기획예산처 및 조달, 경찰, 방재, 기상, 문화재, 산림, 철도, 해양경찰청 3급이상 공무원
 - 기타 중앙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
 - ※ 국방부 : 장관급 장교, 경찰, 해양경찰청 : 경무관 이상, 소방방재청 : 3급 이상 또는 소방감 이상

○기능

- 재난복구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, 확정
-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협의
-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협의
- 국고지원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 협의
- 기타 중앙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협의

□ 중앙 사고수습 본부

○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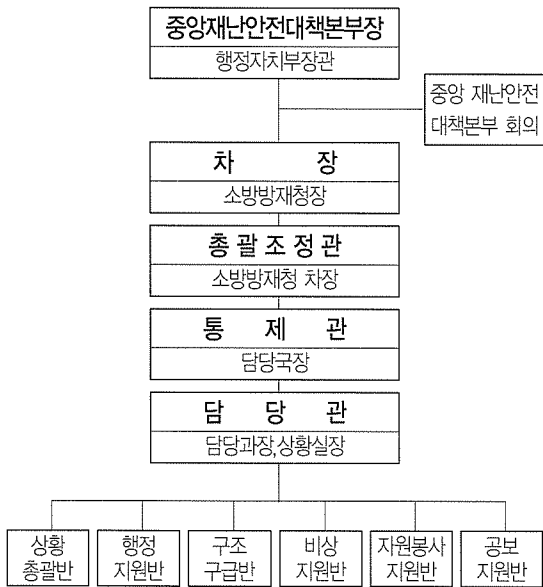


그림 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 운영체계

- 본 부 장 : 주무부처의 장

- 구성,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미리 중앙본부장과 협의
- ※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에 설치

○ 기 능

- 소관 재난관리 업무의 총괄 조정 및 집행
- 재난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 비축, 관리
- 재난발생시의 응급 조치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협조
- 기타 재난현장 복구 지원 등

□ 정부합동 해외 재난대책 지원단

○ 구 성

- 단 장 :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명
- 단 원 : 관계 중앙기관 및 관계 기관, 단체 소속 공무원, 임직원, 전문가로 구성

○ 기 능

- 해외재난 긴급구조 및 사상자 신원확인, 부상자 치료, 시신안치

- 해외재난 사고원인의 조사 분석
- 해외재난과 관련된 유가족 등에 대한 법률 상담 등 현지 지원
- 해외재난 수습상황의 대내, 외 공보 및 정부대책 홍보
- 기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항

□ 중앙 수습지원단

○ 구 성

- 단 장 :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명
- 단 원 : 관계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전문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

○ 기 능

- 재난발생지역의 책임자인 지역본부장 등에 대하여 사태수습에 필요한 기술 자문, 권고 또는 조언
- 재난 수습을 위하여 행, 재정적으로 조치할 사항, 재난현장 상황, 재난의 발생원인 및 진행 전망 등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

□ 중앙 합동조사단

○ 구 성

- 단 장 : 소방방재청장이 지명
- 단 원 : 관계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전문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

○ 기 능

- 피해조사 및 피해원인 분석
- 재난구호 및 복구계획(안)의 작성
- 피해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의 확인과 응급조치 계획의 수립

□ 중앙 긴급구조 통제단

○ 기 능

- 국가 긴급구조 대책의 총괄, 조정 및 긴급구조 활동의 지휘, 통제

특별기사

- 긴급구조 지원기관의 역할분담 등 긴급구조를 위한 현장활동 계획의 수립
- 기타 긴급구조 대응계획의 집행 등

<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영위원회>

○ 조직구성

- 위 원 장 :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위원중에서 지명
- 위 원 : 15~20인 이내
- 국방부, 보건복지부, 경찰청, 해양경찰청 관계자 등
- 긴급구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 자
- 간 사 : 소방방재청 긴급구조 업무 담당과장

○ 기능

- 국가 긴급구조 대책의 총괄, 조정 및 긴급구조 활동의 지휘, 통제
- 긴급구조 지원기관간의 역할분담 등 긴급구조를 위한 현장 활동계획의 수립

2. 지방단위 재난관리 기구

□ 지역안전관리위원회 (시, 도 단위)

○ 구성

- 위 원 장 : 시, 도지사
- 위 원
 - 시, 도 지방경찰청장, 지역사단장, 시, 도교육감, 재난업무담당국장, 시, 도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, 단체의 장
 - 재난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 자
- ※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구성, 운영

- 간 사 : 위원장이 지정

○ 기능

-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, 조정
-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안전관리계획(안)의 심의
-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, 조정
- 다른 법령, 조례에 의하여 당해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
- 기타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의 심의

□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

○ 조직 운영체계

그림 3 참조

○ 기능

- 관할구역내의 재난대책의 총괄조정 및 집행
- 재난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비축
- 재난발생시의 응급조치 및 복구사업 실시, 감독

□ 지역합동 조사단

○ 구성

- 단 장 : 시, 도지사가 지명
- 단 원 : 관계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전문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

○ 기능

- 피해상황 조사 및 총괄조사표, 재난피해 조사서 대장 작성
- 피해복구 계획(안)과 공공시설 피해 및 복구내역 조사
- ※ 중앙조사단이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조사 결과를 중앙조사단장에게 제출

□ 지역 긴급구조 통제단

○ 기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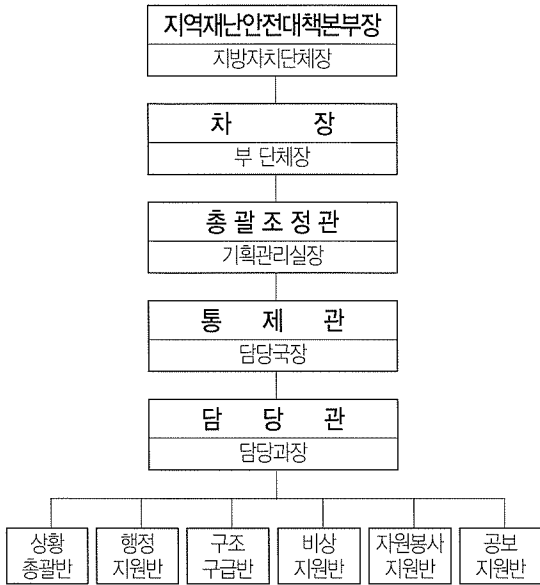


그림 3.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 운영체계

- 지역 긴급구조 대책의 총괄, 조정 및 긴급구조 활동의 지휘, 통제
- 긴급구조 지원기관의 역할분담 등 현장활동 계획의 수립
- 기타 긴급구조 대응계획의 집행 등

3. 재난관리 책임기관

-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정의
-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
- 대통령이 정하는 지방행정기관, 공공기관, 공공단체 및 재난관리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
- 재외공관, 국립수의과학검역원, 국립식물검역소, 지방체신청, 국립검역소,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, 지방노동청, 지방항공청, 지방국토관리청, 홍수통제소, 지방해양수산청, 지방산림관리청, 한국철도공사지역사무소, 시, 도 교육청, 지하철공사, 도시철도공사, 농업기반공사, 농수산물유통공사, 한국가스

공사, 한국가스안전공사, 한국전기안전공사, 한국전력공사, 한국자원재생공사,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, 대한주택공사, 한국수자원공사, 한국도로공사, 한국토지공사, 인천국제공항공사, 한국공항공사, 향만공사, 한국방송공사, 국립공원관리공단, 한국산업안전공단, 한국산업단지공단, 부산교통공단, 한국철도시설공단,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, 한국원자력연구소,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, 농업협동조합중앙회,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, 산림조합중앙회, 대한적십자사, 하천법에 의한 댐 등의 설치자, 관리자,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력발전관련시설 관리기관, 방송법에 의한 재난방송사업자,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재난 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, 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, 기타 소방방재청장이 재난의 예방, 대비, 대응, 복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, 단체

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임무

- 소관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계획 수립, 시행
- 안전관리현장을 관련시설 또는 지역에 상시 게시
- 안전관리계획 작성 시, 도지사 또는 시장, 군수, 구청장에게 제출
- 시, 군, 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보고, 통보
- 안전관리계획 세부집행계획수립
- 재난발생 위험시설에 대한 지정, 관리 및 정비
- 긴급 점검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
- 안전조치 명령 위반시 사용 제한 및 금지, 필요한 안전조치
- 재난응급대책 및 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비축, 재난방지사설 정비
- 시장, 군수, 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의 지휘 또는 조정에 응급조치 실시 및 협력

특별기사
7/3

③ 재난, 안전 관련 계획

1. 계획의 개요

- 법적 근거
 -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 내지 제25조
- 성 격
 - 재난의 예방, 대비, 대응, 복구 단계별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의 근간이 되는 계획
- 계획의 추진경과
 - 우리나라는 산업화, 도시화 및 정보화 등 급속한 재 환경변화 속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977년부터 방재계획을 1996년부터는 국가재난관리계획을 수립, 시행하여 왔으나,
 - 계획수립, 운영이 이원화되어 대형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범국가적인 대처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'01년 태풍「루사」, '02년 태풍 「매미」 등 대형 자연재난과 '03년 2월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재난 전담기구(소방방재청)를 신설하고 재난관련 법령의 통합, 정비 등 국가재난관리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며,
 - 2004. 6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으로 종전의 방재계획과 재난관리계획을 안전관리계획으로 통합하여 중앙부처의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과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세부집행계획, 시, 도 및 시, 군, 구안전 관리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, 시행토록 하였음

2. 계획수립 절차 및 분야

- 계획수립 절차
 - 그림 4 참조
- 계획수립 분야
 - ① 풍수해대책 ⑨ 해상재난대책
 - ② 설해대책 ⑩ 방산능방재대책
 - ③ 가뭄대책 ⑪ 전기, 유류, 가스재난대책

- ④ 지진재난대책 ⑫ 폭발, 대형화재대책
- ⑤ 해일대책 ⑬ 건축물, 통신 등 시설물재난대책
- ⑥ 항공재난대책 ⑭ 독극물, 환경오염사고대책
- ⑦ 철도재난대책 ⑮ 국가기반체계보호대책
- ⑧ 도로재난대책 ⑯ 산업재난대책

④ 재난의 분류 및 관련 용어 정의

1. 재난의 분류

-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「재난」이란 국민의 생명, 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종류로 구분
 - ① 태풍, 홍수, 호우, 폭풍, 해일, 폭설, 가뭄, 지진, 황사, 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(자연재난)
 - ② 화재, 붕괴, 폭발, 교통사고, 화생방사고, 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(인적재난)
 - ③ 에너지, 통신, 교통, 금융, 의료, 수도 등 국가 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(사회적 재난)
- ※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,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써 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으로 정의

2. 법령에 규정된 災難, 災患 관련 용어의 정의

- 민방위의 개념
 -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(민방위사태)으로부터
 -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
 -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, 응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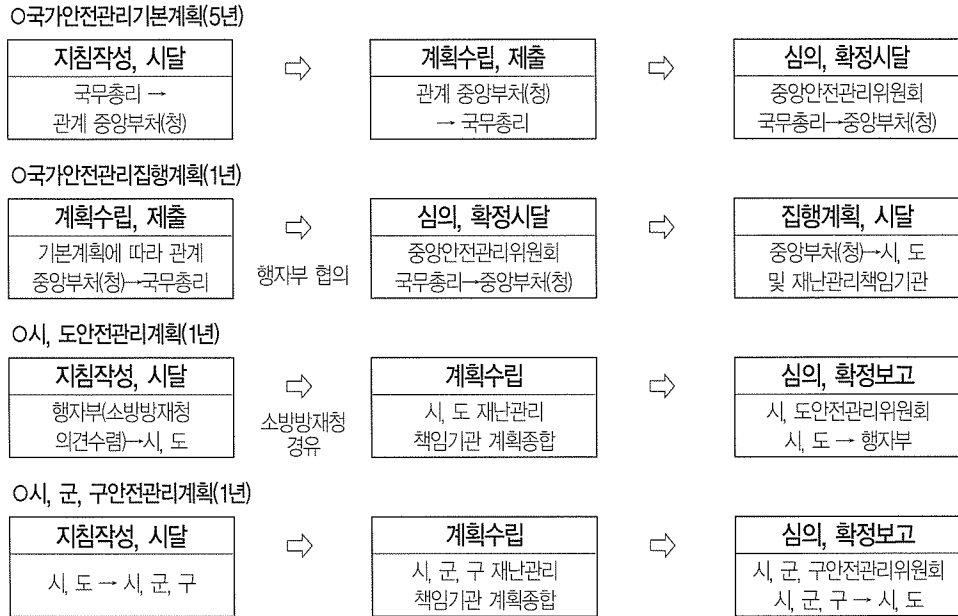


그림 4. 계획수립 절차

적인 방재, 구조, 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

□ 재난관련 용어의 정의(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 3조)

○「재난」: 국민의 생명, 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

① 태풍, 홍수, 호우, 폭풍, 해일, 폭설, 가뭄, 지진, 황사, 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(중전의 자연재해)

② 화재, 붕괴, 폭발, 교통사고, 화재방사고, 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(중전의 인적재난)

③ 에너지, 통신, 교통, 금융, 의료, 수도 등 국가 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(사회적 재난)

○「해외재난」: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

-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,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써 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

○「재난관리」: 재난의 예방, 대비,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

○「안전관리」: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

- 사람의 생명,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

○「재난관리 책임기관」: 재난관리 업무를 행하는

-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

- 지방행정기관, 공공기관, 공공단체(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)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 시설의 관리 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

○「긴급 구조」: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때에

특별기사 7

- 국민의 생명, 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
- 긴급 구조기관과 긴급 구조 지원기관이 행하는 인명구조, 응급조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
- 「긴급 구조기관」: 소방방재청, 소방본부 및 소방서
 - 다만, 해양에서의 재난의 경우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함
- 「긴급 구조 지원기관」: 긴급 구조에 필요한 인력,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
- 재해관련 용어의 정의(「자연재해대책법」제2조)
 - 「재해」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
 - ※ ① 태풍, 홍수, 호우, 폭풍, 해일, 폭설, 가뭄, 지진, 황사, 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 - 「자연재해」: 태풍, 홍수, 호우, 강풍, 풍랑, 해일, 조수, 대설, 가뭄, 지진(지진해일 포함), 황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 - 「풍수해」: 태풍, 홍수, 호우, 강풍, 해일, 조수,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 - 「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」: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,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
 - 「풍수해 저감 종합계획」: 지역별로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시, 도지사 및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지역안전도에 대한 평가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
 - 「우수 유출 저감시설」: 우수의 직접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에 침투시키거나 저류시키는 시설
 - 「수방 기준」: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내구성 강화 및

- 지하 공간의 침수방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준
- 「침수 흔적도」: 풍수해로 인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
- 「지구단위 홍수 방어 기준」: 상습 침수지역이나 재해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한 기준
- ※ 소방관련 용어의 정의(「소방 기본법」제2조)
 - 「소방 대상물」: 건축물, 차량, 선박(항구안에 매어둔 선박에 한함), 선박건조 구조물, 산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물건
 - 「소방대」: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, 재난,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, 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직체로서
 -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
 - 의무소방대설치법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
 - 소방기본법에 따른 의용소방대원
 - 「소방본부장」: 시, 도에서 화재의 예방, 경계, 진압, 조사 및 구조, 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
 - 「소방대장」: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, 재난,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자

전체 본문을 원하시면 토기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.